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

2016. 3.

미 래 창 조 과 학 부

1. 개정이유

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관련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, 보험료 카드 납입을 가능하도록 하며, 재보험사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정비(안 제41조제3항제4호, 제56조제2항)

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른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해 불필요한 수집 근거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함.

나. 보험료의 카드 납입 관련 근거 신설(안 제47조제3항)

결제 편의,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카드 결제의 보편화 추세를 반영하고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함.

다. 재보험사 선정 관련 대상자 기준 요건 개선(안 제60조의3)

외국보험회사가 우체국보험의 재보험회사 계약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보험회사 기준 대상을 확대함.

라. 알기 쉬운 법령 정비(안 제63조제2호)

보상금의 집행 목적에 맞게 일부 보상금 용어를 변경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3항제4호 중 “및 주민등록번호”를 “및 생년월일”로 한다.

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구체적인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

제47조제3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방법
5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납입하는 방법

제56조제2항 중 “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그”를 “그”로 한다.

제6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업자”를 “사업자 또는 동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외국보험회사”로 한다.

제63조제2호 중 “보상금”을 “영업지원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7조제3항 단서 및 제4호 및 제5호는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1조(보험계약의 청약) ①·② (생략)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험 증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략) 4. 보험계약자(보험계약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 자를 말한다)·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성명·주소 및 <u>주민등록번호</u> 5. ~ 7. (생략)	제41조(보험계약의 청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 <u>및 생년월일</u> 5. ~ 7. (현행과 같음)
제47조(보험료의 납입) ①·② (생략) ③ 보험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 여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. <u><후단 신설></u>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47조(보험료의 납입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. <u>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구 체적인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 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</u>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「 <u>여신전문금융업법</u> 」에 따 른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방법 5. 「 <u>전자금융거래법</u> 」 제2조

	<u>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납입하는 방법</u>
④・⑤ (생략)	④・⑤ (현행과 같음)
제56조(환급금의 지급) ① (생략)	제56조(환급금의 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체신관서가 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, <u>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</u>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그 ----- ----- ----- -----
제60조의3(재보험회사의 기준) 보험의 재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「보험업법」 제4조에 따른 재보험의 영업허가를 받은 <u>사업자</u>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.	제60조의3(재보험회사의 기준) 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업자 또는 동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외국보험회사</u> ----- -----
1.・2. (생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제63조(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)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63조(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) ----- ----- -----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관서 <u>보상금</u> : 보험업무를 취	2. ----- <u>영업지원금</u> -----

급하는 체신관서 3. ~ 7. (생략)	----- 3. ~ 7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